## 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

	이찬거며	•	하구	여서이	새애주기병	성·생식건강조사(2차)
ш	급열신경	•	인ሓ	97 d H	/ö'/ \T/ \Z	7878747627112717

□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~2025.10.17.

□ 입찰방법: 긴급/제한경쟁입찰(협상에의한계약)

## □ 관련근거

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-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
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·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-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## 2)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

- '25.6.30.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 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

## □ 긴급입찰공고 사유

○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